

# 감사위원회 규정

분류번호	I- 경영 - 03
주관부서	감사팀
제·개정 이력	2003. 10. 15. 제정
	2008. 05. 30. 1차 개정
	2009. 03. 13. 2차 개정
	2010. 04. 23. 3차 개정
	2012. 02. 09. 4차 개정
	2012. 07. 27. 5차 개정
	2017. 09. 01. 6차 개정
	2018. 11. 05. 7차 개정
	2022. 03. 29. 8차 개정
	2023. 03. 29. 9차 개정

## 차 례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기능)

### 제 2 장 구성

제 4 조 (구성)

제 5 조 (위원장)

### 제 3 장 회의

제 6 조 (종류)

제 7 조 (소집권자)

제 8 조 (소집절차)

제 9 조 (결의방법)

### 제 4 장 권한과 의무

제 10 조 (권한)

제 11 조 (의무)

제 12 조 (독립의 원칙)

### 제 5 장 외부감사인의 선정·선임 등

제 13 조 (외부감사인 선정·선임)

제 14 조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

제 15 조 (외부감사인 계약 검토 및 사후관리)

제 16 조 (외부감사인 해임)

제 17 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제 6 장 보칙

제 18 조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자의 출석)

제 19 조 (감사보좌기구)

제 20 조 (간사)

제 21 조 (의사록)

제 22 조 (감사록의 작성)

제 23 조 (규정의 개폐)

附 則

# 감사위원회 규정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관계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 조 (기능)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 제 2 장 구성

### 제 4 조 (구성)

- ①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5 조 (위원장)

-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3 장 회의

### 제 6 조 (종류)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 7 조 (소집권자)

-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8 조 (소집절차)

- ① 감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전을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서신,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9 조 (결의방법)

- ①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대면 회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모든 감사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만 허용할 수 있다.
- ③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 감사위

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 장 권한과 의무

### 제 10 조 (권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상법 제412조의 3)
2.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상법 제402조)
3.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상법 제412조)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상법 제394조)
5.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이사의 보고 수령(상법 제412조의 2)
6.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상법 제412조)
7.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상법 제412조의 5)
8. 외부감사인의 선정, 변경 및 해임(외감법 제10조·13조)
9.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외감법 제22조)
10.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실태 평가(외감법 제8조)
11.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 요구(상법 제415조의 2)
12. <삭제> (2023.3.29.부)
13.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제 11 조 (의무)

위원회의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상법 제447조의 4)
2.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 조사 후 주주총회에 그 의견 진술(상법 제413조)
3.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이사회에 보고(상법 제391조의 2)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이사회에 보고(외감법 제8조)
5. 감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분기별로 이사회에 보고(이사회규정 제11조 제3항)

6. 직무상 취득한 기밀의 준수 의무(상법 제382조의 4)
7.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 제 12 조 (독립의 원칙)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의결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제 5 장 외부감사인의 선정·선임 등

#### 제 13 조 (외부감사인 선정·선임)

- 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을 선정·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선정·선임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

- ① 감사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및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
  3. 직전 사업연도에 회사의 감사업무를 한 전기 외부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용

- 다.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 라. 그밖에 외부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 제 15 조 (외부감사인 계약 검토 및 사후관리)

- 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외부감사인 해임)

감사위원회는 선임된 외부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외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회사에 해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임 요청된 외부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 절차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 제 17 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장 보칙

### 제 18 조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자의 출석)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9 조 (감사보좌기구)

- ①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보좌기구로 내부감사부서를 둔다.
- ②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감사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과 평가 권한을 갖는다.
- ④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예산 및 조직 편성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 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내부감사 업무 처리절차인 내부감사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 권한을 갖는다.
- ⑥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통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내부감사부서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과 적정 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20 조 (간사)

- ①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를 간사로 둔다.
- ② 간사는 감사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관리한다.

### 제 21 조 (의사록)

- ①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 22 조 (감사록의 작성)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고, 내부감사부서는 감사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23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

## 附 則

1.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8년 5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2년 2월 0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7년 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8년 11월 0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3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